

#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인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052
----------	------

발의년월일 : 2019년 10월 15일

발 의 자 : 황인구 의원 (1명)

찬 성 자 : 장인홍, 김수규, 조상호,  
전병주, 김 경, 최 선,  
최기찬, 여 명, 채유미,  
김경영, 이영실, 권순선,  
김기덕 의원 (13명)

## 1. 제안이유

- 일부 고등학교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미준수, 불합리한 처우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고등학교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산업 현장과의 연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지원 및 관리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현장실습의 내실화와 참여 확대, 산업체와의 협력 제고 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조례의 적용범위와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현장실습의 기본방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6조).
- 라. 현장실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현장실습 운영기준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마. 현장실습 추진의 내실화와 책임성 확보 등을 위한 학교별 현장실습 운영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 바. 현장실습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별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사. 현장실습의 방법, 현장실습산업체의 발굴 및 선정, 사전교육, 현장실습협약과 현장실습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제16조).
- 아. 원활한 현장실습 운영을 위하여 단위학교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자. 현장실습 산업체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학부모와 졸업생 등의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제19조).
- 차. 현장실습 내실화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학생, 학교 등에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등학교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산업현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2. “현장실습생”이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협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3. “현장실습산업체”란 법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공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 및 발달 단계에 맞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 저소득층 자녀, 국가유공자 자녀, 한부모가족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을 위한 현장실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현장실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산업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설치된 다음 각 호의 학교 (이하 “학교”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3.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각종학교 중 산업·문화예술정보학교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현장실습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방향) ① 현장실습은 다양한 직업 체험을 통하여 현장적응력을 갖춘 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현장실습과 취업을 구분하는

실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 시 산업체 선정과 실시 시기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생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노동인권교육을 충실히 실시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 직업적성심리검사 및 상담 등을 바탕으로 교내활동, 현장체험학습,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 등 다양한 현장실습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실습의 운영기준 등) ①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7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기준과 함께 현장실습에 필요한 매뉴얼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기준 및 매뉴얼을 수립·개발하는 경우 현장실습산업체의 종류별 특징을 고려하여 이미 현장실습을 받은 현장실습생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운영기준 및 매뉴얼의 수립·검토, 선도기업의 심의·선정 등을 위하여 현장실습 관련 관계 기관, 전문가, 교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선도기업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현장실습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

감이 정한다.

제8조(현장실습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장은 내실 있는 현장 실습 운영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장실습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은 학교 구성원, 산업체 관계자 등과 협의를 하여 수립하되, 학생의 안전과 노동인권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실습운영위원회)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계획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지역 산업계 및 취업 관계 기관 관계자 등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원 위원은 현장실습 업무 담당부장, 학과부장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10조(현장실습의 방법) 현장실습은 학교와 산업체의 여건, 학년,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산업체의 발굴이 어렵거나 산업체 현장실습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교내 활동 프로그램

램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우수교육기관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2.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
3.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
4. 그 밖의 현장실습

제11조(현장실습산업체의 발굴 및 선정 등)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 및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교육적 가치가 실현되는 현장실습이 가능한 산업체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 산업체를 사전 방문하여 교육적 측면에서 현장실습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활한 현장실습 지원을 위하여 현장실습을 보조하는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운영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한다.

④ 학교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현장실습산업체가 운영기준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교육감에게 선도기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선도기업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선도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사전교육의 실시 등)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학생들이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현장실습 활동 중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산업안전·직업윤리 등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현장실습산업체의 정보, 직무내용, 현장실습제도 및 운영계획 등 현장실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가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을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관련 기관·단체에서 개발한 교재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현장실습협약의 체결) ① 단순 견학이나 체험이 아닌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및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함께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현장실습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장실습산업체에 관계 법령의 준수, 현장실습 담당자의 배치 등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현장실습 지도·점검 등)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인권보호, 현장실습산업체의 현장실습 운영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방문

순회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도·점검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현장실습 담당 교원 등으로 구성된 현장실습 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5조(학생의 안전보장) ① 교육감은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생이 신속하게 치료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른 보험급여 외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현장실습의 평가)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 결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현장실습 정책 수립과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현장실습 운영결과를 분석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교육감은 원활한 현장실습 운영을 위하여 단위 학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생의 전공에 부합하는 현장실습 산업체를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새로 발굴된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한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학부모 등의 참여) 교육감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졸업생 등이 현장실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표창 등) ①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내실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적인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책무), 제6조(기본방향), 제7조(현장실습의 운영기준 등), 제8조(현장실습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제9조(현장실습운영위원회), 제10조(현장실습의 방법), 제11조(현장실습산업체의 발굴 및 선정 등), 제12조(사전교육의 실시 등), 제14조(현장실습 지도·점검 등), 제15조(학생의 안전보장), 제1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8조(협력체계 구축), 제19조(학부모 등의 참여), 제20조(표창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단, 같은 조례안 제3조(책무), 제6조(기본방향), 제7조(현장실습의 운영 기준 등), 제8조(현장실습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제9조(현장실습운영 위원회), 제10조(현장실습의 방법), 제11조(현장실습산업체의 발굴 및 선정 등), 제12조(사전교육의 실시 등), 제14조(현장실습 지도·점검 등), 제15조(학생의 안전보장), 제1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8조(협력체계 구축), 제19조(학부모 등의 참여)에 따른 비용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기 추진하고 있으므로 서울시교육청 재정수입의 순감소나 재정지출의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 아님([붙임] 참고)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21,650천원(연평균 4,33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4,33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현장실습의 내실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 비용은 이와 유사한 서울시교육청 기 추진 사업 ‘교원포상업무’의 세부사업인 ‘서울교육상’ 예산을 준용하여 비용추계
  - 물가상승률은 미반영
  - 비용은 2020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21,650천원(연평균 4,330천원)
- 표창 비용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안계8조						
	표창 비용	4,330	4,330	4,330	4,330	4,330	21,650
소계(b)		4,330	4,330	4,330	4,330	4,330	21,650
□총 비용(b-a)		4,330	4,330	4,330	4,330	4,330	21,650

○ 표창 비용 ≙ 21,65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text{연간표창비용})_i = 4,330\text{천원}$

※ i = 비용추계 연차(2020~2024년)

· 2019년 ‘서울교육상’ 예산 준용

- 대상 : 서울교육 발전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서울교육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
- 내용 : 서울교육 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 발굴 및 교육공동체 및 지역 사회의 교육에 대한 중요성 재인식 및 서울교육 발전에 대한 협력 분위기 마련
- 소요예산 : 4,330천원

자료 :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분    석    관      원동아

☎ 02-2180-7953

e-mail : dongya1@seoul.go.kr

## 【붙임】 서울시교육청 기 추진사업

(단위: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세세부사업명)	2019년 예산	사업내용
제3조제2항 (책무)	장애학생교육활동지원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 운영 지원)	10,184	· 학교교육과정 연계 장애학생 취업 직종 개발 및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직업체험 기본·심화 과정,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사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지역사회 사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연계한 장애학생 취업·창업교육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학년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76p. 참고(첨부자료)		
제3조(책무)제3항, 제7조(현장실습의 운영기준 등)제3항, 제18조(협력체계 구축)	고졸취업지원확대 (취업지원센터운영 (산학관협력사업))	47,300	· 특성화고 산업분야별 학과장, 기업체·산업체(SC)·유관기관 관계자 대상으로 산학관협력프로그램 사업설명회, 우수취업처 발굴 등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학년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pp.26-28, 34p, 46p 참고(첨부자료)		
제6조(기본방향)제4항, 제8조(현장실습 운영계획의 수립· 시행)제2항, 제12조(사전교육의 실시 등)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학년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10p, pp.32-33, 34p, 53p 참고(첨부자료)		
제6조(기본방향)제5항, 제10조(현장실습의 방법)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학년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pp.8-9 참고(첨부자료)		
제8조(현장실습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학년도 현장실습 운영계획(예시)」 참고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문으로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계열 학교로 위 자료를 매년 송부함		
제9조(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학년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2019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실습 운영지침」 II. 현장실습 운영 계획 5.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분	세부사업명 (세세부사업명)	2019년 예산	사업내용
제14조(현장실습 지도·점검 등)	직업교육선도모델지원 (현장성강화)	13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현장실습 관리시스템 운영 및 학습중심 현장실습 기관 인증제 운영(대한상공회의소)</li> <li>· 현장실습 학생 대상 사이버 교육(한국기술교육대학교)</li> <li>· 학습중심 현장실습 지도점검(한국공인노무사회)</li> </ul>
제1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고졸취업지원확대 (현장실습)	1,408,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와 기업이 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현장실습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li> <li>· 학습중심현장실습으로 제도 변경에 따른 학생 교통비 및 식비 지원</li> <li>· 학습중심현장실습으로 제도 변경에 따른 교사 실습과정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li> <li>· 현장실습 연계교육비 전출</li> </ul>
제19조(학부모 등의 참여)	고졸취업지원확대 (특색사업)	41,368	사업대상: 특성학교 학생 및 교사, 학부모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amp;D팀 운영</li> <li>· 또래노동지킴이단 운영</li> <li>· 선배가 추천하는 알짜기업자료 제작</li> </ul>
	※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등은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통해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 심의, 실습시기 결정, 학생지도 및 산업체 감독 등 참여		

자료: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 제3조(책무)제3항, 제7조(현장실습의 운영기준 등)제3항, 제18조(협력체계 구축) 관련사항

「2019학년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발췌

□ 2019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실습 운영지침

III. 현장실습의 운영

11. (현장실습 참여(선도)기업의 선정) ⑤ 교육청은 취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지방고용청, 지방중기청 등 유관기관을 포함하여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도기업을 인정하여야 한다.

○ 현장실습 기업 선정(46p)

<주요활동>

- 시·도교육청은 지자체, 지방고용청, 지방중기청 등 유관기관을 포함하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도교육청별 협의체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도기업 인정·등록

□ 제6조(기본방향)제4항, 제8조(현장실습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제2항, 제12조(사전교육의 실시 등) 관련사항

「2019학년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발췌

□ 2019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실습 운영지침

IV. 현장실습 학생 지도 및 감독

14. (현장실습생 지도) ① (사전 교육) 학교는 학생의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노동관계법(노동인권) 교육, 산업 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직업윤리교육, 실습생의 책임·의무·권리 등에 대한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 후 수업 등을 통하여 실시해야 한다.

□ 제6조(기본방향)제5항, 제10조(현장실습의 방법) 관련사항

「2019학년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발췌

□ 현장실습 운영 유형(pp.8-9)

○ 학교 밖에서의 현장실습을 우수교육기관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산업체 발굴이 어렵거나 희망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내 대체 프로그램 운영

< 현장실습 운영 유형 >

구분	세부 활동 내용	실시 시기
교내 활동	◦ 창업 및 전문교과 동아리 활동, 전문가 초빙강의 등	1~3학년
교외 활동	◦ 우수교육기관(공동실습소, 폴리텍,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전문대학 등)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1~3학년
	◦ 산업체 체험형(취업캠프, 견학, 체험) 현장실습	1~3학년
	◦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	3학년



## □ 제9조(현장실습운영위원회) 관련사항

### 「2019학년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발췌

#### □ 2019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실습 운영지침

##### II. 현장실습 운영 계획

5. (현장실습운영위원회) 학교는 교원, 학부모, 지역 산업계 및 취업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포함한 9인~15인으로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 심의, 실습시기 결정, 학생지도 및 산업체 감독 등 현장실습 계획과 운영 전반을 협의하고 결정한다. 이때, 교원위원은 현장실습 업무 담당부장, 학과부장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 □ 제11조(현장실습산업체의 발굴 및 선정 등) 관련사항

### 「2019학년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발췌

#### □ 2019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실습 운영지침

##### III. 현장실습의 운영(제11조제1항)

11. (현장실습 참여(선도)기업의 선정) 학교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현장실습 운영과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인권을 보호하면서 현장실습이 가능한 건설한 기업체를 발굴·선정한다.

##### □ 학교 취업역량 강화(제11조제2항)

- 전문적인 취업지원 역량을 갖춘 취업지원관을 모든 직업계고에 교당 1인 이상 배치('19년, 400명 → '22년, 1,000명)
- 취업지원관은 산업체 재직경험이 있는 신중년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 우수 취업처 발굴, 학생 취업상담, 일자리 매칭, 추수지도·관리 등의 역할 수행
-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운영 조례」에 취업지원관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교육공무직 정원 관리 규정에 취업지원관 직종 포함 필요

자료: 「2019학년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23p

## □ 제15조(학생의 안전보장) 관련사항

### 「2019학년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발췌

#### □ 현장실습생의 안전·권익 보호 및 사전교육 실시(제15조제1항)

##### ○ 전담노무사제 도입

- 전체 직업계고에 전담노무사를 지정하여 현장실습, 노무관계 등에 대한 상시적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 전담학교 배정을 통한 전문성을 유지하고, 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도·점검 지원
- 공인노무사의 현장실습 기업 현장방문을 통해 기업의 근로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 ○ 현장실습 사전교육 실시

- 현장실습 참여 학생 대상 고용노동연수원에서 운영하는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 사이버교육' 및 안전보건공단 주관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 교원 대상 '직업계고 노동인권 연수'(1박2일 집합연수, 고용노동연수원) 및 '청소년 노동인권, 교사와 만나다'(15차시 원격연수, 중앙교육연수원)에 적극 참여하여 현장실습생 사전교육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 확보

□ 2019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실습 운영지침

IV. 현장실습 학생 지도 및 감독

14. (현장실습생 지도) ⑤ (안전사고 조치) 안전사고 발생 시 학생은 실습장의 책임자, 부모님과 학교에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고 즉시 치료를 받으며, 보고를 받은 관계자는 실습 학생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실습장 책임자 또는 학교는 안전사고 발생 현황, 처리방법, 사후 처리 및 후속지원 방법을 포함하여 교육청 업무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선 구두보고 후 서면보고 하고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관련 Q&A(고용노동부)(제15조제2항) pp.84-91

□ 제20조(표창 등)제2항 관련사항

「2019학년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발췌(28p)

① < 현장실습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 혜택]

❖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우대) 병역특례업체 선정에 가점(5점)이 있는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에 선취업·후학습 인증기업 우대

❖ (정책자금\* 지원) 선취업·후학습 인증기업을 ‘일자리창출촉진자금\*\*’지원 대상에 포함

\* 정책 지원이 필요한 성장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저리로 공급하는 자금

\*\* '19년 예산 3,000억원/(금리) 2.0% 내외/(지원한도) 60억원 내외/(대출기간) 5~10년

❖ (공공입찰 가점) 선취업·후학습 인증기업이 공공입찰 시 신인도 가점\* 부여

\* 적격 심사 시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기업 등에 가점을 부여

❖ (중소기업 지원사업 우대) 선취업·후학습 인증기업이 중소기업 R&D, 수출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5점 배점 부여)

[현장실습 참여·선도기업 세액공제]

❖ 기업이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 산업체 신용도 평가 항목에 ‘고졸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을 반영하여 금리 우대

※ (우리) 수신 수수료 면제, 금리우대(최대 0.4%), 보증료 감면(최대 0.4%)

(국민) 추가 우대금리(0.5~1.3%p) / 선도기업(0.5%p)·도제기업(0.8%p)+일자리 창출 우대금리(0.5%p)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현장실습 선도기업의 경우는 피보험자 1~5인 미만이라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검토('19.상)